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980
----------	-------

발의연월일 : 2026. 9. 1.

발 의 자 : 송옥주 · 윤준병 · 임미애
전용기 · 이상식 · 황명선
이수진 · 강준현 · 한정애
문대림 · 서미화 · 오세희
전종덕 의원(13인)

제안이유

탄소중립 실현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산림과 농지 등의 추가적인 개발을 최소화하면서 이미 공공목적으로 조성된 국유재산의 유희공간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도로 유희부지, 하천구역 내 비탈면 및 제방 등은 국유재산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국유재산법」에는 이를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한 공간으로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

이에 국유재산 중 도로의 비탈면·녹지대 등 유희공간, 하천구역 내 제방·비탈면 및 농업생산기반시설인 구거 등 본래의 기능과 공공목적에 지장이 없는 유희공간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한 용도로 사용허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 국가의 재생에너지 보급정책에 기여하는 사업, 지역주민이 참여하거나 발전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사업 등에 대하여 국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 유휴공간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려는 것이다.

주요내용

- 가. 국유재산 중 도로 유휴공간, 하천구역의 제방·비탈면, 농업생산기반시설인 구거 등의 유휴공간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운영을 위한 용도로 사용허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2 신설).
- 나.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한 사용허가의 기간 및 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2).
-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 주민참여형 사업, 지역사회 수익환원 사업 등에 대하여 국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의2 신설).
- 라. 국유 유휴공간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하여 국유 유휴공간의 조사, 정보 제공 및 사업 발굴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의2 신설).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국유 유희공간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사용허가

등) ① 중앙관서의 장은 국유재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희공간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용도로 사용허가할 수 있다.

1.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비탈면, 녹지대, 방음벽, 옹벽 및 그 밖의 도로 유희공간
2.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중 제방, 비탈면 및 그 밖에 하천의 관리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유희공간
3.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구거 및 그 주변 유희공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재산 중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유희공간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는 해당 국유재산의 본래 기능 및 목적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1. 재산의 구조적 안전성 및 기능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
2. 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을 것
3. 해당 국유재산의 유지·관리 및 공공적 이용에 지장이 없을 것
4.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및 안전성 검토를 거칠 것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 및 운영기간을 고려하여 사용허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방법, 기간,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를 위한 사용료의 감면)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30조의2에 따라 국유재산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용도로 사용허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2.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사업
3. 지역주민이 출자하거나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4. 발전수익의 일정 부분을 해당 지역의 주민 또는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사업

5. 국가의 탄소중립 및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율, 감면기간 및 감면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은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해당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국유 유휴공간의 재생에너지 활용 촉진) ① 국가는 국유재산 중 본래의 행정목적 또는 공공목적에 지장이 없는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국유 유휴공간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운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유 유휴공간의 조사 및 정보 제공, 사업 발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국유 유휴공간의 조사 및 정보 제공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허가 중인 국유재산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재생 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에 대하여도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30조의2(국유 유휴공간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사용허가 등) ① 중앙관서의 장은 국유재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휴공간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용도로 사용허가할 수 있다.</u> <u>1.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비탈면, 녹지대, 방음벽, 옹벽 및 그 밖의 도로 유휴공간</u> <u>2.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중 제방, 비탈면 및 그 밖에 하천의 관리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유휴공간</u> <u>3.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구거 및 그 주변 유휴공간</u> <u>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재산 중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유휴공간</u> <u>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는</u>

② ~ ④ (생략)

<신설>

해당 국유재산의 본래 기능 및 목적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1. 재산의 구조적 안전성 및 기능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

2. 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을 것

3. 해당 국유재산의 유지·관리 및 공공적 이용에 지장이 없을 것

4.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및 안전성 검토를 거칠 것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 및 운영기간을 고려하여 사용허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방법, 기간,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2조의2(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의 설치를 위한 사용료의 감면)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30조의2에 따라 국유재산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용도로 사용허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2.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사업
3. 지역주민이 출자하거나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4. 발전수익의 일정 부분을 해당 지역의 주민 또는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사업
5. 국가의 탄소중립 및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

<신 설>

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율, 감면기간 및 감면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은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해당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43조의2(국유 유휴공간의 재생

에너지 활용 촉진) ① 국가는 국유재산 중 본래의 행정목적 또는 공공목적에 지장이 없는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국유 유휴공간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운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유 유휴공간의 조사 및 정보 제공, 사업 발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에

	<u>따른 국유 유희공간의 조사 및</u> <u>정보 제공에 적극 협조하여야</u> <u>한다.</u>
--	---